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 상임임원 선출 의무화〉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5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인 이상의 여성이 사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반해 최근 6년간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여성임원이 8%에 달하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뒤처짐.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2%에 달하고,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8%에 달함. 이에 따라 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26조제2항).

또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는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등)

개정안은 ①농협중앙회에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인 경우 3명의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②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에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

현행법 제45조¹⁾는 조합(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 대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 이사 정수의 20%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 배분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면서,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이사 중 1명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여성 임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조직문화 전반에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중앙회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여성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중앙회의 경우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때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②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의 경우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때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각각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직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조직에서 최소한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앙회의 여성 직원 비율은 25.8%로 개정안에 따라 여성 상임임원 의무 선출이 적용되는 기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앙회 직원 성별 현황]

구 분	정 규 직					관리자급 (3급이상)
	M급	3급	4급	5급이하	계	
전체	137	573	869	514	2,093	710
여성	12	124	218	186	540	136
비율	8.8	21.6	25.1	36.2	25.8	19.2

자료: 농협중앙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등의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성별 균형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 제126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임원은 이사 28명과 감사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상임임원으로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이 있음. 그러나 현재 상임임원 3명은 모두 남성이며, 전체 임원 중 여성은 외부전문가 이사 1명에 불과함.

[농협중앙회 임원 구성]

구 분	임 원	정 수	구 분	임 원	정 수
이사회	회장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상임)	1
	상호금융대표이사(상임)	1		감사위원	4
	전무이사(상임)	1			
	조합장인 이사	18			
	외부전문가 이사	7			

자료: 농협중앙회

아울러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에도 각각 9명,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 중 여성 이사는 1명으로, 타 금융지주회사 대비 그 비율이 저조한 편임.

[금융지주 임원등 성별 현황]

구 분	성 별	농협지주	신한지주	KB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이사회	남	8	7	6	9	6
	여	1(11.1%)	4(36.4%)	3(33.3%)	3(25.0%)	2(25.0%)
	합계	9	11	9	12	8
부사장 상무 등	남	6	6	21	19	9
	여	-	2(25.0%)	2(8.7%)	2(9.5%)	-
	합계	6	8	23	21	9

[은행 임원등 성별 현황]

구 분	성 별	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사회	남	7	8	6	7	5
	여	1(12.5%)	1(11.1%)	2(25.0%)	2(22.2%)	3(37.5%)
	합계	8	9	8	9	8
부행장 상무	남	15	19	25	27	18
	여	1(6.7%)	1(5%)	4(13.8%)	-	4(18.2%)
	합계	16	20	29	27	22

자료: 농협중앙회

둘째, 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사회적·제도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8년부터 각 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규정하였고,²⁾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³⁾

2020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이사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여성 임원 선임 관련 규정]

제34조(임원선임의 원칙)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장애인·지역인재·여성·청년 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데 제도적, 사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임원 구성 시에 다양한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 중에는 2025년 「새마을금고법」에서 중앙회의 26명의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⁵⁾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은 아니나 사회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역시 양성평등 강화를 통해 조직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다만 2025년 기준 86개 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14.8%로 2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회 예산정책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5.9.)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이사회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새마을금고법」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중앙회의 인사 운영 구조 및 법령상 임원 선출 요건을 고려할 때 직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여성직원 중에서 상임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통상 직원 중에서 집행간부⁶⁾가 선출되고 집행간부 중 임원이 선출되는 구조로,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직원 중에서 직접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감사위원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3명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되,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⁷⁾ 법령상 여성 직원을 상임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는 구조임.

-
- 6)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7)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둘째, 상임임원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성 상임임원 배분을 의무화할 경우 전문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의 경우 법정 상임임원이 3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을 여성으로 의무화할 경우 성별 요건이 다른 임명 기준보다 우선하게 되어 임원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선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계열사 및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을 2명 이상일 때 1명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기준 농협중앙회의 34개 계열사⁸⁾ 중 여성직원이 30% 이상인 곳은 12개로, 그 중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곳은 NH농우바이오, 농협식품, NH농협무역, 농협은행, 농협생명 5개사인데,

해당 계열사의 상임임원은 2명에 불과하여 여성직원 비율이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명 중 1명(50%)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같이 여성임원이 전체 임원 정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성별 불균형 완화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현행법에서는 계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농협중앙회 경영관리규정(내부규정)」에 따르면 계열사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총칭을 말함.

[농협 계열사별 임직원 현황]

구분	법인명	임원 (상근)	전체 임원(등기)				남성직원		여성직원		비고
			인원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임직원수	비율	임직원수	비율	
교육 지원	농협네트웍스	2	11	11	0	0%	196	84.8%	35	15.2%	
	(손)농협파트너스	2	12	12	0	0%	71	84.5%	13	15.5%	
	농협자산관리	2	12	12	0	0%	97	79.5%	25	20.5%	
	농협정보시스템	2	11	11	0	0%	446	76.8%	135	23.2%	
경제 지주	경제지주	2	12	11	1	8%	1,798	79.2%	471	20.8%	
	농협하나로유통	1	16	16	0	0%	317	79.3%	83	20.8%	
	농협유통	2	18	18	0	0%	656	71.8%	258	28.2%	
	남해화학	4	18	18	0	0%	555	92.3%	46	7.7%	
	(손)NES마티얼즈	1	6	6	0	0%	26	86.7%	4	13.3%	
	농협케미컬	2	19	19	0	0%	212	84.1%	40	15.9%	
	NH농우바이오	2	11	11	0	0%	260	68.1%	122	31.9%	
	농협에코아그로	2	13	13	0	0%	61	84.7%	11	15.3%	
	농협식품	2	8	7	1	13%	37	53.6%	32	46.4%	
	농협양곡	1	8	8	0	0%	61	78.2%	17	21.8%	
	농협홍삼	1	5	5	0	0%	41	65.1%	22	34.9%	
	NH농협무역	2	13	12	1	8%	37	63.8%	21	36.2%	
	농협물류	2	16	16	0	0%	250	88.7%	32	11.3%	
	오리온농협	1	6	5	1	17%	66	66.7%	33	33.3%	
	농협사료	3	26	26	0	0%	593	89.8%	67	10.2%	
	농협목우촌	2	21	20	1	5%	248	82.4%	53	17.6%	
	(손)농협TMR	1	12	12	0	0%	15	93.8%	1	6.3%	
	(손)농협우리사료	1	10	10	0	0%	22	95.7%	1	4.3%	
금융 지주	농협금융지주	2	9	8	1	11%	115	82.1%	25	17.9%	
	농협은행	2	8	7	1	13%	6,610	49.0%	6,890	51.0%	상근감사위원
	농협생명	2	11	10	1	9%	605	65.5%	318	34.5%	상근감사위원
	농협손해보험	2	9	8	1	11%	468	70.7%	194	29.3%	
	NH투자증권	1	7	5	2	29%	1,140	51.8%	1,062	48.2%	
	(손)NH선물	1	6	6	0	0%	49	61.3%	31	38.8%	
	(손)NH자산운용	1	4	4	0	0%	6	31.6%	13	68.4%	
	NH아문디자산운용	1	7	6	1	14%	138	65.7%	72	34.3%	
	농협캐피탈	1	6	5	1	17%	252	71.2%	102	28.8%	
	NH저축은행	1	7	5	2	29%	74	56.5%	57	43.5%	
	농협리츠운용	1	8	7	1	13%	22	84.6%	4	15.4%	
	NH벤처투자	1	4	4	0	0%	10	66.7%	5	33.3%	

주: 여성임원 중 상근임원은 없음.

자료: 농협중앙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적용

례를 신설하여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하는 임원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상 상임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제130조제6항),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제129조제2항)이며, 계열사의 상임임원 등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14